

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8. 5. 9 규칙 제1235호
일부개정 2015. 8. 13 규칙 제1428호
일부개정 2018. 1. 25 규칙 제1495호
일부개정 2021. 8. 10 규칙 제160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2조(이용시간) ① 청소년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가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8. 13>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,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3조(휴관)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1월 1일, 설날 연휴, 추석 연휴, 근로자의 날,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따르며, 청소년 센터는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③ 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④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, 자료의 정리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4조 삭제 <2021. 8. 10>

제5조(이용료의 환불)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6조(이용신청) 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

작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7조(이용의 제한)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행위로 인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1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2. 음주, 흡연,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
3.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8조(운영위탁의 공고)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, 위치, 시설, 위탁조건,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9조(운영신청 등)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1. 사업계획서(운영 경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)
2. 법인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본(단체 등은 이에 준하는 서류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3.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
4.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실적
5.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사본
6.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10조(재위탁 또는 대리의 금지)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11조(계약의 갱신 등)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

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8. 13]

제12조(계약서)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시설,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 8. 13>

제13조(보험가입)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·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변상책임) ①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.

<개정 2015. 8. 13>

제15조(반환)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,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, 장비, 비품,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산·물품관리)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·물품을 「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양시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8. 13>

제17조(수입금 등의 사용) ① 운영자는 회계장부를 비치·관리하여야 하며,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,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사업비,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, 그 밖의 단위사업 보조금 등 각종 수입금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② 운영자는 제1항의 각종 수입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사업종료 후 보조금집행 결산서를 포함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③ 운영자는 사업비의 집행 또는 그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

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3>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.
- ③(다른 규칙의 폐지) 규칙 제1153호 「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한다.

부칙 <2015. 8. 13 규칙 제142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2호, 별표 1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. 25 규칙 제149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8. 10 규칙 제1601호>

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5. 8. 13>

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 (제2조 관련)

시 설 명	평 일	토요일	공휴일	비 고
청소년 수련관	06:00~22:00	06:00~22:00	09:00~18:00	청소년수련 시설
청소년 문화의집	10:00~21:00	10:00~18:00	10:00~18:00	
청소년 상담복지센터	09:00~21:00	-	-	청소년복지지원 시설
청소년 쉼터	24시간			청소년복지 시설

[별표 2] <개정 2015. 8. 13>

이용료의 반환기준 (제5조 관련)

사유 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 (반환신청일)	반환기준	비고
운영자 귀책사유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		이용개시 전일까지	전액	
		이용개시일 이후	일할계산	
이용자 귀책사유	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	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 중 “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” 및 “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”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		
	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			

